

보도시점 2024. 7. 14.(일) 12:00 / 배포 2024. 7. 12.(금) 08:30
< 7. 15.(월) 조간 >

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

-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,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-

※ 주말 엠바고 주의 : 7월 14일(일요일)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※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,600개 납품·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,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,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,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<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개요>

- 조사기간 : 2024. 7. 15. ~ 9. 20.
- 조사방식 : 온라인조사 및 면접조사(일부)
- 조사대상 : 9개 업태*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,600여 개 납품·입점업체
* ①백화점 ②대형마트 ③편의점 ④온라인쇼핑몰 ⑤TV홈쇼핑 ⑥아울렛·복합몰 ⑦티(T)-커머스 ⑧면세점 ⑨전문판매점
- 조사내용 : 11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,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, 표준 계약서 활용 현황,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

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*을 추가하여 9개 업태,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·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. 이에 따라 호텔신라, 롯데면세점, 신세계면세점,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, 다이소, 하이마트,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되었다.

* 전문판매점(verical commerce, category killer): 좁고 깊게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내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플랫폼을 의미

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(이하 ‘법’)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(법 제14조의2)을 포함하여,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(법 제6조의2②),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(受訴法院)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(법 제26조의2),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.

또한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*을 심사지침에 반영**하여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된 만큼,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.

*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공개모집하고,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,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·차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**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,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

공정위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,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,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,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.

<붙임> 2024년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류용래 (044-200-4960)
		담당자	사무관	최유빈 (044-200-4963)



1

추진 현황

□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(이하 ‘납품·입점업체’)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* (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)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○ 올해는 기존 7개 업체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체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,600여 개 납품·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< 대규모유통업자(42개 유통브랜드) 및 조사대상 >

업태 (브랜드 수)	유통브랜드	조사대상 납품업체 수*		표본 추출률
		2024년	2023년	
대형마트·SSM(5)	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, 코스트코, 하나로마트	1,500개	1,500개	11.6%
편의점(5)	GS25, CU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이마트24	500개	500개	15.9%
백화점(5)	롯데, 신세계, 현대, 갤러리아, AK	1,500개	1,500개	5.6%
면세점(4)	호텔신라, 롯데, 신세계, 현대	300개	-	16.8%
TV홈쇼핑(5)	GS, 현대, CJ, 롯데, 홈앤쇼핑	500개	500개	13.0%
온라인쇼핑몰(4)	쿠팡, 카카오 선물하기,마켓컬리, SSG.COM	1,500개	1,600개	3.3%
아울렛·복합몰(5)	롯데·현대·뉴코아·신세계(아울렛),스타필드(복합몰)	1,000개	1,000개	8.8%
T-커머스(5)	SK스토아, K쇼핑, 신세계TV쇼핑, 쇼핑엔티, W쇼핑	400개	400개	13.7%
전문판매점(4)	올리브영, 다이소, 하이마트, 전자랜드	400개	-	14.9%
합계	42개 유통브랜드(39개 유통업체)	7,600개	7,000개	-

* 업태별, 거래형태별, 거래액 규모별(상·중·하) 계층에서 각 표본 선정

2

실시 개요

- (조사 기간 및 방식) 7,600여 개 납품·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며, 공문을 수령한 조사대상 업체가 누리집 (<http://k.ftc.go.kr>)을 통해 응답하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루어진다.

 - (조사 내용)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,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, 불공정거래행위 경험*, 신규제도에 대한 인지도,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.
- * ①서면 미·지연교부 및 불완전 서면교부(제6조), ②대금 부당감액(제7조), ③대금 지연지급(제8조 제1항, 제2항 및 제3항), ④부당반품 및 수령지체(제9조 및 제10조), ⑤판촉비용 부당전가(제11조), ⑥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(제12조) ⑦배타적 거래요구(제13조) ⑧경영정보 부당요구(제14조) ⑨경제적 이익 부당수취(제15조) ⑩영업시간 구속(제15조의2) ⑪불이익 제공(제17조)

3

향후 계획

- 공정위는 납품·입점업체들의 응답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조사 결과를 올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.

- 또한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.
 - 불공정거래 경험 :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

 - 신규제도 인지도 등 : 납품업자 교육 및 홍보정책 수립에 반영